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23 선고 2021가단580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5. 12.(피고 B에 대하여) 2022. 6. 2.(피고 C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1. 12. 8.까지는 각 월 85,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9. 5.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5. 14. 접수 제503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
2.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8. 10. 31. 피고 B에게 각 2,500만 원을 이자 각 월 85,000원, 변제기 각 2019.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 B과 사이에 이자를 월 85,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초과하여 연 5%(월 104,166원)의 이자를 구하나, 위 8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B이 2019. 5. 14.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갑 제3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1. 10. 21.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1. 17.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 C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피고 B과 원고들이 부녀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인 2018. 10. 31. 원고들에게 차용금 각 2,500만 원, 이자 각 85,000원, 변제기 2019. 10. 31.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같은 날 피고 B 명의 계좌로 원고들이 각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수개월간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이자로 정한 85,000원이 수차례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 B에게 각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 356,0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금 235,000,000원을 제외하면 121,00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 피고 B이 혼인 후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처분 말소를 위해 1,500만 원, 수리비 2,140만 원을 지출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원리금으로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8. 8. 22.

혼인하였다가 2019. 6. 3. 이혼하여 혼인기간이 약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유의미한 재산은 없어 보이는 사실(이 사건 부동산 증여 2일 후인 2019. 5. 16. 피고 B이 피고 C의 아들 E 명의로 이전한 안양시 만안구 F, G호는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피고 C이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처분등기는 피고 C이 증여받은 이후 사해행위취소를 피보전권리로 마쳐진 것인 사실, 피고 C이 제출한 전기·수도요금, 이자 지출내역은 이혼 이후 기간의 것인 사실, 피고 C 계좌에서 수리비가 일부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 B의 입금내역이 존재하고 공동으로 거주한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소극재산은 남겨 두고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만을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은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9.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5. 14. 접수 제503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문희

선 정 자 명 단

1. A
2. D. 끝.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층 호 70.67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대488.4m²

대지권의 종류 : 1.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88.4분의61.05

